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1(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8. 19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0. 8. 20

라. 상정일자 : 2010. 9. 6(제18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건설교통국장 백은기
- 검토보고 :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교통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및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구분함(안 제6조)
-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도록 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 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 시설 및 교통수단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교통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제하므로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의 명시가 필요 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며,
- 현재 교통과 관련하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도시교통 정비촉진법)/교통안전정책심의회(교통안전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위원회(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도시교통정책심의회(도시교통 촉진법)/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의 유사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하여 장기적으로 유사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 이성만 의원
 - 교통위원회와 도시교통 정책심의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와의 차이점과 기존 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닌지?
- 정수영 의원
 - 본 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사항인지?

<답 변>

- 백은기 건설교통국장
 - 타법에 의한 위원회로서 향후 개정 예정으로 통폐합 예정임
 - 교통 중장기계획 용역 결과과 조만간 제출 될 예정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가 필요함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김병철, 이도형, 정수영, 안병배, 류수용, 이성만, 제갈원영
이재호 위원
-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 찬성 : 8명)
 - 조례안 “제3조제2항제8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3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②(생략) 4~7 (생략) <u><신 설></u>	제3조(구성) ①~② (제정안과 같음) 4~7 (제정안과 같음) <u>8. 인천광역시의회 의원</u>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천광역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제통상국장
2. 도시계획국장
3. 환경녹지국장
4. 도시철도건설본부장
5.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6. 교통 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7.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정책업무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정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